

##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
- 수입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함
-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않아 혼란야기

### □ 주요골자

-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당해년도의 공시지가로 통일하고 수입금액 계산 방법과 기준일 명시
- 면제대상 세목에 소방공동시설세 추가

### 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4
- 지방세법 개정(안)

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(참 조)